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의 발전 방향

崔秉祚*

I. 『법학』지와의 인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지의 반세기를 기리는 이 자리에서 감히 그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만 더 일렀더라면, 『법학』지와 반세기를 꼭 함께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만, 아쉽게도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1학번이어서 반세기의 인연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으로는 학생시절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이래로 일관되게 애정을 가졌고, 그래서 그 시절에 청계천에 준비하던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제1호부터의 전질을 제 연구실 서가에 모셔두고 매번 한 권 한 권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흐뭇함은 서울대 법대와의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해 초 서암법학관으로 연구실을 옮기면서 공간부족으로 초기의 국판본만 빼고는 더 이상 개인으로 소장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선배 동료교수님들의 노고와 지혜가 소중한 것인데, 이 책은 디지털자료로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현대적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데 서툰 저로서도 아쉽지만 감히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학』지와의 제 인연은 정희철 선생님과 김치선 선생님께서 소장을 하실 때 법학연구소 조교를 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당시로서는 공무원 신분)의 조교가 하는 주요업무가 바로 『법학』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였습니다. 제17권 제1호(1976. 6)부터 제20권 제1호(1979. 8)까지 총 7권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현재 법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이춘옥 씨께서도 당시 법학연구소에 근무하셨는데, 아침마다 타주시던 달콤하고 향기로운 커피는 법대 최고의 솜씨였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니다. 교수님 수도 현재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던 그 시절은 연구여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초등학교에서 미국의 원조물자인 옥수수가루와 분유를 배급받던 어렵던 시절은 벗어났지만 아직 여러 모로 대학의 연구투자가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말이지만 90년대 중반까지도 ‘大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이 유럽의 책조차 제대로 구입할 줄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괄윤직 교수님 민법총칙인가 어딘가의 서문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원 판결도 얻어볼 수 없다고 토로하시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창간이래 꾸준히 발간되어온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 학술지인 『법학』지의 작업은 제게 큰 자부심을 주는 것이었고, 이메일도 없던 그 당시에는 복도에서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원고청탁과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연구실로 쳐들어가곤 하면서 원고 모으느라 진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교정의 큰 뭍도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 시절 제가 『법학』지 조교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지의 체제를 개선해서 당시에는 보통 일본말로 ‘하시라[柱]’, 즉 기둥말이라고 부르던(이것은 세로 조판한 일본책에는 모양새가 맞지만 가로 조판인 우리나라 책에는 부적절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었다), 요즈음 표현으로는 머리말을 개선한 것입니다. 제18권 제2호(1978. 2)부터 그 전에는 필자명이 없던 머리말에 필자명을 넣고 법학지 이름과 면수 표시도 개선한 것입니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제49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50권부터는 더욱 세련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18권 제1호(1977. 6)부터는 겉표지 맨 아래 연월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교 재직 기간 중에 『법학』지를 이한기 선생님(제18권 제1호)과 정희철 선생님(제20권 제1호)의 화갑기념논문집으로 꾸몄던 일도 다른 때보다 신경 쓸 일은 많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한기 선생님 기념호는 당시로서는 놀랍게도 총 412면이나 되는 두툽한 논문집이었습니다. 『법학』지에 대한 제 사랑은 글을 내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려고 (논문은 감히 욕심낼 수 없기에) <자료>를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제19권 제2호(1979. 2)에 게재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법대 4년을 마무리하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에버하르트 슈미트호이저(Eberhard Schmidhäuser)의 <독일형법총론>(제2판, 1975) 중에서 부작위범에 있어서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부분의 번역문을 법대학생잡지인 Fides 제19권 제1호(1974)에 게재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글은 서독의 범조인양성제도에 관한 번역자료인데,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막연하던 내용들이 그 후 독일 유학을 하면서 분명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은 대륙법계로 강의식 교육이 위주라고 듣다가 현지에 가서 모든 강좌가 사례풀이에 집중된 것

을 보고 정말로 놀랐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밖에도 판형이나 표지의 장정 등을 더 멋지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었는데, 이 일은 한참 후에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법대 선생님들의 전통의식은 매우 공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최대권 선생님께서 소장으로 계시던 때에 저는 연구부장을 했는데, 소장님의 결단으로 그 전까지 푸르죽죽한 단색으로 우중충하던 장정을 2001. 5 간행분부터 깔끔한 현재의 표지로 바꾸었습니다. 판형의 변경은 아직까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유학을 마친 후 로마법과 같은 이상한 전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교에서 기꺼이 뽑아주셔서 『법학』지와의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취임인사차 연구실로 방문한 저에게 은사, 선배 교수님들께서 각자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고 김증한 선생님께서 로마법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덧붙이신 “그런데 꽤 외로울 것일세.” 하신 말씀입니다. 비주류법학의 어려움을 각오하라고 조언해 주신 것인데, 껍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서 늘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셔서 김증한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것만큼은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준 것이 바로 『법학』지입니다. 다른 법학분야와 달리 제 전공인 로마법은 그야말로 『법학』지가 없으면 글을 발표할 지면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형편이었고, 지금도 대략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률격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Nullum ius Romanum, sine Seoul Law Journal’(『법학』지가 없으면 로마법도 없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김동희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아직도 제가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김동희 선생님께서는 송상현 선생님과 함께 2학년 뎡가 부임하셨는데, 행정법 수업시간에 두툼한 문고판본 불어책을 들고 들어오셔서 늘 ‘똥세이유 데따’ 판례가 어찌고 하시면서 열강을 하셨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학우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매우 흥미있게 수강했던 선생님이셨는데, 바로 그분께서 새로 출발하는 초년생 교수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법학』지 매호에 글을 발표하도록 노력해라.” 당신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선생님 따라하려고 했는데, 황새 흉내 내던 뱀새 꼴이 아니었지만 바랄 뿐입니다.

『법학』지와의 제법 긴 인연은 2003~2005년 법학연구소 소장직을 2년간 맡으면서 더욱 깊어졌고, 또 이런저런 배려로 『법학』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현직 소장님들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법학』지의 판형 개선에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 기회 될 때마다 제안을 하곤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교, 연구부장, 소장(2003~2005), 편집위원장을 거치면서 직접 『법학』지의 간행에 관여한 기간만으로도 저는 『법학』맨입니다.

II. 『법학』지의 위상과 역할

『법학』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 교수님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고, 각론적으로는 뒤이은 발표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유능한 동료 교수님들께서 이제는 국문 법학잡지인 『법학』지와 별도로 영문 법학잡지인 『Journal of Korean Law』를 발간한 지도 이제 10년 가까운 연륜이 쌓여가고 있고, 특히 그 편집진을 국제적으로 구성하여 우리 법대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대권 소장님 때 시작한 <법학학술총서>가 계속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만) 제가 소장이던 때 개시한 법학박사 학위논문의 <법학연구총서> 단행본 출간사업과 여러 센터들의 연구성과물 출판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달랑 『법학』지 하나만이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시대가 이미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 심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에 힘입어 제 전임이었던 김건식 소장님 때부터 우리 법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연구소 정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오고 있는 것은 자부할 만한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III. 『법학』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상

이상에서 말씀드린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마디 하라는 것이 주최 측의 명이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학술지 관련해서 특별한 식견도 없는 터라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3부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갈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안도 속에서 그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학』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실로 괄목할 만한 발전

을 거듭했습니다. 외부의 기준으로 말하더라도, 제가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임하던 중에는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의 진일보도 이제 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논문의 투고자도 본교 교수에 한정되던 것이 하루가 다르게 전국화 되고 있고, 편집진도 역시 외부인사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투고 논문의 수와 양이 매 호마다 한 권의 분량으로 삼기에는 과중하다고 느낄 정도로 팽창하기도 했습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 절차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심사 자체도 객관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 논문의 실질, 즉 내용의 다양화와 그 질적인 제고에만 힘을 쓰면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최 측의 요망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법학』지의 경우 그 발전 방향이란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미래의 具顯像(vision)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지는 어떤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두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법학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외국에 우리 법학의 성과를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언어 문제로 인해서 후자의 역할에는 일정한 (상당한 정도의)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가시적인 지표는 아마도 인용빈도를 통해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법학계에 공통된 이러한 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용이 잘 될 주제나 내용만을 다루는 논문에 의식적으로 치중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광범위한 주제의 연구를 자유롭게 전개하는 전통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아직 통일된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외국어 요약문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고, 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외국어 요약문을 함께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법학』지의 내용을 알리는 외국어 요약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그 홍보 효과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단상에 불과합니다만,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소간의 개선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논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1) 『법학』지의 분화

외국의 경우 한 대학에서 다종의 법학잡지가 발간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단일한 종합법학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을 좀 더 세분된 전문법학학술지로 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총의로 지혜로운 해안(解案)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의 『법학』지 발간 주기를 재조정하는 문제 같은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론으로서는 자주 발간될수록 정보제공이 빨라지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투고자의 범위 확대와 공동연구의 진작

종래 우리나라 법학계의 관행은 정식의 연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령 학생신분으로는 법학잡지에 글을 신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원에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의 법률문제를 고려할 때 다양한 관여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진작시키고, 이를 『법학』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궤도에 들어서서 학문 상호간의 공동작업이 법학도들 사이에서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학제의 개혁과 함께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일반대학원의 젊은 법학도들을 연구자의 길로 참여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양한 유형의 논고 개발과 자료 제공 기능의 강화

지금까지도 『법학』지의 게재논고는 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주로 번역자료) 등으로 다양한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대체로는 논문에 치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유형이나 기타 유형의 논고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판례의 소개 및 간단한 평석을 『判例回顧』라는 별도의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제8호를 끝으로 종간(終刊)되었던 아쉬운 기억도 있습니다(1973~1980). 틈틈이 자료 등이 실렸지만 학계의 활발한 토론을 증개할 서평은 거의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논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논고는 편집진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하여 원고를 청탁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라도 우리나라의 법학 발전에 의미 있을 대상들이 학계와 실무계와 일반에 두루 그리고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평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개나 칭찬 일색의 홍보성 서평이 아니라, 심도 있는 본격적인 서평을 주문생산해서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중요한 기초법적 또는 비교법적 자료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번역 소개하는 작업도 『법학』지가 담당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편집진의 다양화·국제화 및 심사절차의 내실화

국문 잡지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아니면 적어도 중국어나 일본어)가 가능한 외국의 저명학자(찾아보면 있을 것이다)를 편집진에 포함시켜서 일방 『법학』지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타방 국제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심사절차를 촉박한 가운데 단기간에 마치는 방식에서 심사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더욱 내실 있는 심사평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질적인 점검이 더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외적인 체제(판형, 장정, 제본, 글꼴 등)의 개선

이상의 내용적인 면 외에도 홍보의 시대인 오늘날 잡지의 외적인 체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고수하여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으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법학잡지로서의 품격을 살리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뒤적이고 싶게 만드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멋진 모양새를 갖춘 책으로 꾸밀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6) 홍보와 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

사실 『법학』지는 우리의 자부(自負)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빈번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법학연구자에게 실물이 배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간 소식이나 그 내용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홍보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발전, 진화와 더불어 많은 전문정보들이 온라인에서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가공되어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활용될 수 있게끔 제공되는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학』지의 경우에도 법학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파일이 나열되어 있을 뿐 새로 발간된 호(號)의 목차를 수요자 입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목차에서 해당 제목을 선택할 경우 논문 본문으로 연결되는 링크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모처럼 법학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찾은 사람도 『법학』지를 실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좀 더 수요자의 편리를 고려한 인터페이스의 구축과 발간 사실에 대한 홍보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의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 목차나 필자별 색인과 같은 것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종래 『법학』지는 다른 곳에 신기 어려운 분량의 논문들도 마다하지 않고 게재함으로써 우리 법대의 교수님들이 발표 지면을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임해 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이러한 장점이 앞으로도 잘 살려나가야 할 『법학』지만의 미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학』지의 그 동안의 성취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어질 다양한 발표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심정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